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2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안도걸 · 임오경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 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 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u>「</u>근로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입양휴가-----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본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